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0일 정진욱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진욱의원)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연구개발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
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생산시설과 동
일한 수준의 고사양 고가의 장비 도입이 필요하나 첨단 연구개발
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
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 등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
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중고품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8인치 생산시
설 투자 기업의 경우 신규장비 수급문제로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이나, 해당 기업의 중고장비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특성
상 장비가 고가이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고품을 쓰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